

계약규정 제·개정 사전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타 법안의 내용을 계약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가.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- 창업자 → 창업기업으로 어휘 변경(안 제38조)
- 시범특례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75조의2 신설)
- 계약보증금의 귀속 관련내용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맞추어 변경 (안 제79조)

나.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
-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반영(안 제47조)

다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 반영

-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내용 반영(안 제92조의2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
- 담당자(이메일) : 양석근 대리(g65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051-955-5397
- 팩스번호 : 051-955-5405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- 관련 법령 내용의 신속한 규정 반영

첨 부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3장 계약의 방법	제3장 계약의 방법	
제38조(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) ①제19조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제39조의 규정으로 정한다.	제38조(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
1. ~ 9. (생략)	1. ~ 9. (생략)	
10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	1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
가.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	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
		국가계약법 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창업자</u> 나. (생략) 11. (생략) ② ~ ③ (생략) 제47조(수의계약) ① ~ ④ (생략)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 ⑥ ~ ⑧ (생략)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<신설>	----- -----<u>창업기업</u> 나. (생략) 11. (생략) ② ~ ③ (생략) 제47조(수의계약) ① ~ ④ (생략) ⑤ ----- ----- ----- 1. ~ 3. (생략) 4. 「<u>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</u>」 <u>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</u> <u>경우.</u> ⑥ ~ ⑧ (생략)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<u>제75조의2(시범특례에 따른 계약</u> <u>체결)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종</u> <u>류,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</u> <u>대상 사업의 혁신성·특수성 등</u> <u>을 고려할 때 제71조부터 제75</u> <u>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</u> <u>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</u> <u>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	행령 개정 에 따른 어휘변경 이해충돌방지 법 시행에 따 른 내용 반영 [준법지원실 -2159(2022.08. 04)호] 국계약법 시행 령 개정 에 따라 ‘시범특례 제도’의 계약 체결방안 근거 마련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9조(계약보증금의 귀속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95조 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	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·절차(이하 이 조에서 “시범특례”라 한다)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7조의2를 준용하여야 한다.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79조(계약보증금의 귀속) ① (생략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. 1.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·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(단가계약은 제외한다)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(인수하지 않고 관리·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 :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 2.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: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	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미비점을 개선·보완 기존제5항 이기 및 내용변경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. ④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공사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⑤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귀속하지 아니한다.	<u>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귀속</u> ③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95조 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. ⑤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	기존 제2항 이기 기존 제4항 이기
<신설>	<u>제92조의2(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) 계약체결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해</u>	상생협력법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대한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마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	<u>당하는 사유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.</u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	련[ESG경영처-1606(2022.07.15)]